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1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홍기원 · 윤준병 · 문진석
박홍배 · 허 영 · 이언주
부승찬 · 윤후덕 · 이기현
박균택 · 서미화 · 박민규
이광재 · 안태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대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상기관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6호 중 “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를 “변경 및 해제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판정 업무 지원

제19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의3. 제7조의2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생략) ⑥ <u>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u> ⑦ (생략) <u><신 설></u>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u>제7조의2(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①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대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u>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

	<u>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대</u> <u>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u> <u>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u> <u>경우</u> 2. <u>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상기</u> <u>관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u> <u>를 통하여 대상기관이 방위산</u> <u>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u> <u>로 판단하는 경우</u> 3. <u>그 밖에 국가안보상 필요한</u> <u>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경우</u> ③ <u>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u> <u>대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u> <u>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u> <u>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u> <u>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u> <u>사전에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u> <u>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u> <u>장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판정신청 방</u> <u>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판정</u> <u>신청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

원 전담기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신설>

7. ~ 10. (생략)

③ · ④ (생략)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설>

<신설>

3. ~ 5. (생략)

제24조(과태료) ① (생략)

<신설>

원 전담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변경 및 해제 업무-----

6의2. 제7조의2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판정 업무 지원

7.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사람

2의3. 제7조의2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 5. (현행과 같음)

제2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판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u> <u>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u> <u>부과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 ----- ----- -----.
---	---